

## 충청북도 스마트공장(기초) 구축 지원사업 도입기업 모집공고

도내 스마트공장 보급 활성화를 통해 기업의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기초수준 스마트공장 구축·운영 진단 및 솔루션 도입 비용을 지원하고자 「충청북도 스마트공장(기초) 구축 지원사업」을 공고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.

2025년 04월 30일

충청북도지사, 청주시장, 충주시장, 옥천군수, 영동군수, 진천군수,  
(재)충북테크노파크 원장

### I. 사업개요

- 추진목적 : 도내 중소·중견기업 대상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을 통한 제조 경쟁력 강화
- 사업기간 : 협약일로부터 4개월(연장불가)
- 사업내용 : 스마트공장 솔루션 및 자동화장비·제어기·센서 구축비 지원
- 총괄기관 : 충청북도 및 5개 시·군
- 수행기관 : 충북테크노파크 스마트제조혁신센터

### II. 지원대상

- 신청자격
  - 청주시, 충주시, 옥천군, 영동군, 진천군 소재 중소·중견 제조기업

- 아래의 사항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

- 휴·폐업중인 기업
- 국세 및 지방세 체납 중인 기업
- 당해 연도 공장이전 계획이 있는 경우
- \* 사실과 다른 증빙서류를 제출한 경우에는 선정이후에도 임의취소 가능
- 장비 도입이 주목적인 기업
- 유흥·향락업, 숙박·음식점
- 불건전 오락용품 제조업

### III. 지원내용

#### □ 지원지역 및 목표수

| No     | 지역  | 구축목표(개사) |
|--------|-----|----------|
| 1      | 청주시 | 7        |
| 2      | 충주시 | 4        |
| 3      | 옥천군 | 2        |
| 4      | 영동군 | 1        |
| 5      | 진천군 | 1        |
| 총계(개사) |     | 15       |

※ 상기 지역은 스마트공장 구축(예정) 사업장 소재지 기준임

#### □ 지원조건

○ (지원금액) 기업당 총사업비 70,000천원

- 지방비 지원 : 40,000천원 (도비: 50%, 시군비: 50%)
- 기업 자부담 : 30,000천원 이상 \*기준 사업비(7천만원) 초과에 따른 추가비용은 기업 자부담

| 지원유형 | 지원조건  | 지방비지원금                | 사업기간(최대)      |
|------|---|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|
| 기초   | - 기초 수준 이상 스마트공장 구축<br>* 생산정보 디지털화(ex, 바코드·RFID 적용) | 4천만원<br>(자부담 3천만원 이상) | 4개월<br>(연장불가) |
| 동일수준 | - 수준향상 없이 재신청(기초->기초)하는 경우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|

※ '20년 이후 중기부 스마트제조혁신 지원사업에 참여하여 협약 및 종료(성공)후 "중간1" 수준 이상을 판정받은 기업은 **신청불가**, "기초" 수준 판정을 받은 기업은 1회에 한하여 동일수준으로 신청 가능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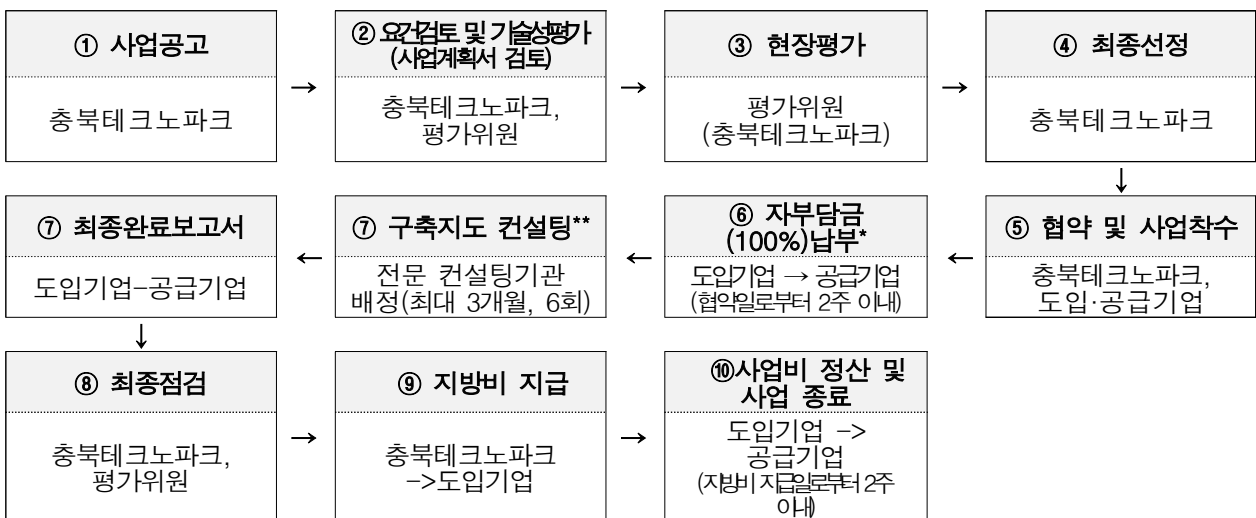
※ 공고마감일 기준 '25년 충청북도 소기업형 스마트공장 구축지원사업, '24년~'25년 중기부 스마트제조혁신 지원사업(제조DX멘토단 활용지원사업(사후관리) 포함), 대중소상생형(지자체-기초 포함) 일체에 신청 중 혹은 협약 중인 기업은 **신청불가**

※ 중기부 스마트공장 사업참여 제한 중인 기업은 신청불가

□ 지원내용

- 제품설계·생산공정 개선 등을 위해 IoT, 5G, 빅데이터, AR·VR, AI, 클라우드 등 첨단기술을 적용한 스마트공장 솔루션 구축 및 구축에 필요한(솔루션 연동) 자동화장비·제어기·센서 등 지원
  - \* 제조 데이터 수집·저장 인프라 구축 등 포함
- 스마트공장의 활용도와 보급수준 향상을 위한 기존 시스템의 고도화 및 스마트공장 설비와 연계시스템의 추가 구축·연동 지원
- 생산공정 및 제조환경변화 등으로 인한 기 구축 시스템의 기능개선 및 필요기능의 추가 도입
- IoT, 5G, 빅데이터, AR·VR, AI, 클라우드 기술 적용 및 실시간 모니터링 범위확대 등을 위한 설비의 추가 도입·시스템 연동
- 스마트공장 적용범위 확대를 위한 연계시스템 추가 구축 및 기존 시스템과의 연동

□ 지원절차 (아래 절차는 운영기관의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)



\* 기업 자부담금 3천만원 이상일 경우, 초과된 자부담금에 대하여 공급기업과 협의 후 차액 납부시기 설정 가능(ex. 도입기업 자부담금 4천만원일 경우 ->선금 3천만원 납부, 최종점검(성공) 이후 잔금 1천만원 납부)

\*\* 선정기업은 "25년 충청북도 중소기업 역량강화 컨설팅 지원사업"을 필수로 신청하여  
구축지도 컨설팅을 이수해야함

## IV. 선정절차 및 방법

### □ 선정방법

- (요건검토) 필수서류 제출여부, 지원대상 적격 여부, 기업 자부담금 책정 여부 등 확인
- (기술성 평가) 사업계획서 제출내용을 기반으로 스마트공장 구축 목표·방식, 달성가능성 및 기업역량 등 서면 평가
- (현장 평가) 사업계획서와 현장의 일치여부, 신청 가점 등의 확인 및 사업비 계상의 적정성 검토 등 현장 평가
- (최종 선정) 선정평가 결과를 종합하여 최종 지원 과제 확정  
①요건검토 → ②기술성평가(서면평가) → ③현장평가 → ④최종선정

| 구 분  | 기술성평가(서면평가)  | 현장평가   | 최종선정                    |
|------|--|--|-------------------------|
| 선정절차 | ◦사업계획서가 제출된 과제 대상으로 계획의 적절성 등 여부를 서면 방식으로 평가                       | ◦서면평가 통과대상으로 사업계획서와 일치 등 여부를 현장확인을 통해 평가     | ◦현장평가 특이사항 등을 고려하여 최종선정 |
| 및 방법 | ◦서면평가 점수(100%)를 반영한 점수에 신청 우대가점을 합산한 최종 점수로 선정하여 구축지원목표의 1.5배수를 선발 | ◦ 현장평가 점수(100%)를 반영한 고득점 순으로 구축지원목표의 1배수를 선발 | ◦선정·탈락 여부 통보            |

### □ 평가기준

① 기술성평가 : 스마트공장 구축의 필요성, 계획성 등을 평가

| 평가 항목                   |  | 배점 |
|-------------------------|--|----|
| 도입·공급<br>기업 역량<br>(35점) | ◦상시 종업원 수, 매출액, 수출액(해당되는경우), 영업이익, 부채비율 등 기업 현황이 양호하고 지속 가능한 기업인가? | 10 |
|                         | ◦도입기업의 현재 모습(현행업무분석을 통한 문제점 도출 등)을 정확히 제시하였는가?                     | 10 |
|                         | ◦도입기업의 자부담비율 등을 통해 스마트공장 고도화 및 확장에 대한 의지를 충분히 제시하였는가?              | 10 |
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|    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|-----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◦공급기업의 사업수행 전문성(기술력) 및 투입인력(개발PM 등)의 적정성을 적절하게 제시하고 있는가?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5   |
| 스마트공장 구축<br>목표 설정<br>타당성(25)  | ◦스마트공장 구축 “주요 내용”의 범위가 명확하고, “목표수준”에 부합되도록 작성되었는가?   | 10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◦수행하고자 하는 “주요 공정별 스마트화 추진 목표”의 내용이 데이터 수집·분석 및 공정통합 관리 등의 활용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되며, “목표수준” 달성에 적합한가? | 10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◦사업비 편성 및 집행계획을 적절하게 제시되어 있는가?   | 5   |
| 스마트공장 구축<br>내용 적절성<br>(15)    | ◦“데이터집계 포인트”의 제시가 도입기업 제조공정도를 토대로 각 공정별 수집 대상 데이터의 종류와 집계방법(자동, 반자동, 수동) 등을 정확히 제시하였는가?      | 5 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◦"솔루션 기능 구성도"가 도입기업 업종의 목표수준에 부합되는 기능으로 적절히 제시되었는가?  | 10  |
| 스마트공장 구축<br>목표달성 가능성<br>(25점) | ◦핵심성과지표 설정이 타당한가? (구축목표 - 구축내용 - 성과지표간 내용 연결, 기존수치/목표수치의 근거제시, 지표 계산식 제시, 기대효과금액 등의 적절성)     | 10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◦"추진조직 및 업무분장"과 "지원계획" 등에서 도입기업/공급기업의 투입인력이 사업수행에 적절한가?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10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◦"추진일정 총괄표"와 "산출물 예정 목록"간의 단계가 일치하며, "산출물 예정 목록"에서 각 단계별 필수 산출물이 적절하게 제시되어 있는가?              | 5   |
| <b>소 계(100)</b>               |  | 100 |
| 가점(5점)                        | 1 ◦충청북도 중소기업 스마트화 역량강화 컨설팅 지원사업 ('22년~'24년) 참여기업   | (3)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2 ◦충청북도 본사 소재기업(도입기업)  | (1)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3 ◦충청북도 본사 소재기업(공급기업)  | (2)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4 ◦뿌리기업, 여성기업, 장애인기업 인증기업  | (2) |
| <b>합 계(105)</b>               |  | 105 |

※ 동점과제 발생 시 모두 서면평가 합격처리

※ 가점은 최대 5점까지 인정, 각 항목별로 하나의 가점사항만 인정

ex) 뿌리기업, 여성기업 모두 해당하는 경우에도 가점 하나(2점)만 인정

- 가점 항목(관련 가점 해당 기업의 경우 증빙 자료 제출 필수)

| 가점항목                  | 평가기준 및 제출서류  |
|-----------------------|--|
| 충북 중소기업 스마트화 역량강화 컨설팅 | · 충청북도 중소기업 스마트화 역량강화 컨설팅 지원사업을 통해 스마트화 컨설팅을 받은 기업 * 증빙자료 제출 필수(협약서) |
| 본사 소재지(도입기업)          | · 도입기업의 본사가 충청북도에 소재한 기업 * 사업자등록증 제출 필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본사 소재지(공급기업)          | · 공급기업의 본사가 충청북도에 소재한 기업 * 사업자등록증 제출 필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뿌리, 여성, 장애인기업         | · 뿌리기업, 여성기업, 장애인기업 중 확인서를 받은 기업 * 증빙자료 제출 필수(확인서)                   |

## ② 현장평가 : 사업계획서 대조·확인 및 참여 의지 등 종합 평가

| 평가항목                     |  | 배점 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|--|-----|
| 스마트공장<br>지원 적정성<br>(50)  | ◦데이터 수집·분석 및 공정통합 관리 등 스마트공장의 특성을 적용할 제조공정을 보유하고 있는가?  | 10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| ◦수행하고자 하는 “주요 공정별 스마트화 추진 목표”의 내용이 데이터 수집·분석 및 공정통합 관리 등의 활용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되며, “목표수준” 달성에 적합한가? | 20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| ◦스마트공장 구축 내용 및 지원의 범위가 명확하고, 목표에 부합되도록 작성되었는가?   | 20  |
| 사업 참여의지<br>및 이해도<br>(40) | ◦도입기업의 자부담비율 등을 통해 스마트공장 고도화 및 확장에 대한 의지를 충분히 제시하였는가?  | 10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| ◦도입기업 대표의 스마트공장에 대한 이해가 적합하고 스마트공장 구현에 대한 의지를 충분히 제시하였는가?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10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| ◦도입기업/공급기업 과제담당자의 스마트공장에 대한 이해가 적합하고 스마트공장 구현에 대한 의지를 충분히 제시하였는가?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10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| ◦"추진조직 및 업무분장"과 "지원계획" 등에서 도입기업/공급기업의 투입인력이 사업수행에 적절한가?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10  |
| 사후관리<br>(10)             | ◦구축 이후 고도화 추진계획에 대한 목표와 로드맵을 적절히 제시하였는가?   | 10  |
| <b>총 점(100)</b>          |  | 100 |

\* 동점 과제는 서면평가 점수가 높은 과제 순으로 선정

## V. 신청기간 및 방법

### □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

- (신청기간) 2025년 4월 30일(수) ~ 2025년 5월 16일(금) 18시까지 접수
- (컨소시엄 구성) 도입기업과 공급기업 간 컨소시엄을 구성하고, 함께 완성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기한 내 온라인 접수
- (신청방법) 스마트공장 사업관리시스템(smart-factory.kr) 온라인 접수
  - 사이트 접속 → 회원가입(기업) → 과제신청 메뉴 → 제출서류 다운로드 및 작성 → 온라인 신청(제출서류 업로드, 도입기업 아이디로 신청 필수)

- 사업참여를 원하는 공급기업은 스마트공장 사업관리시스템에 **공급 기업 풀 등록**을 사전에 완료해야 함(공급기업 소재지 TP 승인 必)
- 시스템 오류, 재무제표 데이터 연계 등을 대비하여 접수 마감일 이전에 회원가입 및 사업신청서 작성을 권장하며, 사업계획서 **“제출완료” 상태 확인 必** (접수 마감 이후 “제출완료” 상태로 변경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도입기업에게 있음)

## □ 제출서류

- 아래의 서류를 사업관리시스템에 항목별로 제출

| <온라인 등록 서류>  |
|--|
| ▪ (도입기업) 사업신청서, 사업계획서, 참여의사확인서 각 1부                |
| ▪ (도입기업, 공급기업) 사업자등록증, 종된 사업자 명세(구축 사업장 기준)        |
| ▪ (도입기업) 최근 3개년도 재무제표증명원 각 1부(2024년, 2023년, 2022년) |
| ▪ (도입기업, 공급기업) 국세 및 지방세완납증명서(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) 각 1부   |
| ▪ (도입기업)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활용동의서 1부              |
| ▪ (도입기업, 공급기업)개인정보수집이용조치 동의서                       |

## □ 문의처

- 충북테크노파크 스마트제조혁신센터(T: 043-270-2812 / E: [dayoon@cbtp.or.kr](mailto:dayoon@cbtp.or.kr))

## VI. 기타사항

- 아래의 지원 불가사항을 반드시 확인 후 지원 바랍니다.
- 2020년 이후 중기부 스마트제조혁신 지원사업에 참여하여 협약 및 종료(성공)후 “중간1”수준 이상을 판정받은 기업은 **신청불가**, “기초”수준 판정을 받은 기업은 1회에 한하여 동일수준으로 신청 가능
- 공고 마감일 기준 '25년 충청북도 소기업형 스마트공장 구축지원사업, '24년~'25년 중기부 스마트제조혁신 지원사업(제조DX멘토단 활용지원사업(사후관리)포함), '24~'25년 대중소상생형 기초(지자체 연계형)

스마트공장 구축지원사업' 일체에 신청 중 혹은 협약 중인 기업은  
신청불가

- 중기부 스마트공장 사업참여 제한 중인 기업은 신청불가함
- 최대 사업수행기간은 4개월이며, 사업기간 연장 불가함
- 공급기업 선정은 최종적으로 도입기업이 결정하며, 책임은 도입기업에게 있음
- 총사업비 중 지자체 지원금을 제외한 초과비용은 도입기업 부담임

사업신청, 용역, 구매, 공사 등과 관련하여 소속 임직원이 금품, 향응을 요구할 경우에는 (재)충북테크노파크 감사실(043-270-2950~2) 또는 홈페이지 부패신고센터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신고자는 부패방지 관련 법률 등에 의거 신분비밀보장을 받게 됩니다.